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89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정준호 · 서영교 · 조인철
김동아 · 박상혁 · 백선희
장종태 · 박균택 · 이정문
김준혁 · 양부남 · 안도걸
박용갑 · 안태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게임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산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현행법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바,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 나.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함(안 제32조의2 신설).
- 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가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함(안 제38조제7항).
- 라.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불법 게임물 등에 대한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 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을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구현된”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불법게임물 유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수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7. 위반행위 이후 위반행위자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

제38조제7항 전단 중 “제3항”을 “제32조제1항제9호·제10호 또는 제3항”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불법게임물 등의 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제9호·제10호 또는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게임물 등이 유통·제공되고 있음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게임물 등에

대한 취급을 긴급하게 거부·정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게임물 등에 대한 긴급차단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차단 조치를 받은 불법게임물 등의 운영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긴급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차단 조치를 받은 불법게임물 등에 대한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필요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불법게임물에 대한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38조제7항에 따른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긴급차단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벌칙) ①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과 관련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2.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를 “제4호 또는 제7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u>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9. <u>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구현된</u> ----- -----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2조의2(불법게임물 유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수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7. 위반행위 이후 위반행위자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32조제1항제9호·제10호 또는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에 데이터베이스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

-----.

⑧ ~ ⑪ (생략)

<신설>

-----.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불법게임물 등의 긴급

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32조제1항제9호·제10호

또는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게임

물 등이 유통·제공되고 있음

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시

정권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

당 불법게임물 등에 대한 취급

을 긴급하게 거부·정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차단”이라 한

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게임물 등에 대한 긴급차단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차단 조치를 받은 불법
게임물 등의 운영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긴급차단된 날부터 5
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
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차단 조치를 받은 불법게
임물 등에 대한 그 취급의 거
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필요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불
법게임물에 대한 그 취급의 거
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3
8조제7항에 따른 조치로 확정
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긴급차단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2(벌칙) ①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과 관련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2.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2. 제32조제1항제1호 · <u>제4호 · 제7호 · 제9호 또는 제10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략) ② · ③ (생략)	<u>의 몰수 · 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u> 제44조(벌칙) ①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u>제4호 또는 제7호에</u>-----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